

| | |
|-------|--------------------------|
| 의안번호 | 제 349 호 |
| 의결년월일 | 1996. 5. 28. (제 44 회) |

| | |
|------------------|----------|
| 의 결 사 항 | 의안 가결 |
|------------------|----------|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 제 출 년 월 일 | 1996. 4. 27. |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의 번 | 안 호 | 349 |
|--------|--------|-----|

제출연월일 : 1996. 4. 27.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항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할때 구체적인 사무위임을 "군사무의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도록 한것을 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됨에따라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제6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소액 지방세 금액을 50만원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제6조의2)
- 균등할 주민세 세율에 있어 당초 법인균등할로 부과하던 개인사업자를 개정세법에 맞게 개인으로 분리하여 50,000원을 부과하도록 함.(안제15조)
-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것을 '96년부터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폐지되고 공시지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조문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함(안제21조)

- 자동차의 취득신고의무조항인 지방세법제196조의9(신고)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군세조례의 자동차 취득신고의무조항을 개정세법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안제28조)
- 지방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제28조)

3. 참고사항

- 참 ○ 도세정13400-238('96. 3. 6)호 「지방세 조례정비」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음면위임조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9조제1항중 "법제266조제3항및 제4항에서"를 "법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8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조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영 업 용 | | 비 영 업 용 | |
|------------|------------|------------|------------|
| 배 기 량 | 씨씨당 세 액 | 배 기 량 | 씨씨당 세 액 |
| 1,000씨씨 이하 | 18원 | 800씨씨 이하 | 100원 |
| 1,500씨씨 이하 | 18원 | 1,000씨씨 이하 | 120원 |
| 2,000씨씨 이하 | 19원 | 1,500씨씨 이하 | 160원 |
| 2,500씨씨 이하 | 19원 | 2,000씨씨 이하 | 220원 |
| 2,500씨씨 초과 | 24원 | 2,500씨씨 이하 | 250원 |
| | | 3,000씨씨 이하 | 310원 |
| | | 3,000씨씨 초과 | 370원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20,000원 |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6,000원 |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3,300원 | 18,000원 |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 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2.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과세표준)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시가표준액</u>으로 한다.</p> <p>제28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u>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이내에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1. <u>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u></p> <p>2. <u>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u></p> | <p>2.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9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u>법 제266조제3항에서</u>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 <u>시가표준액</u>으로 _____</p> <p><u><삭 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3. <u>정차장</u></p> <p>4. <u>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u></p> <p>5. <u>취득가격</u></p> <p>6. <u>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u></p> <p>7. <u>기타 참고사항</u></p> |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신설></p> | <p>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승용자동차</p> <p>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 업 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 영 업 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 기 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씨씨당 세 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 기 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씨씨당 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2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씨씨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원</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씨씨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원</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씨씨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370원</td> </tr> </tbody> </table> <p>2. 기타 승용자동차</p>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영 업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영 업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body> </table> <p>3. 승합자동차</p>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 영 업 용 | | 비 영 업 용 | | 배 기 량 | 씨씨당 세 액 | 배 기 량 | 씨씨당 세 액 | 1,000씨씨 이하 | 18원 | 800씨씨 이하 | 100원 | 1,500씨씨 이하 | 18원 | 1,000씨씨 이하 | 120원 | 2,000씨씨 이하 | 19원 | 1,500씨씨 이하 | 160원 | 2,500씨씨 이하 | 19원 | 2,000씨씨 이하 | 220원 | 2,500씨씨 초과 | 24원 | 2,500씨씨 이하 | 250원 | | | 3,000씨씨 이하 | 310원 | | | 3,000씨씨 초과 | 370원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20,000원 | 100,000원 |
| 영 업 용 | | 비 영 업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기 량 | 씨씨당 세 액 | 배 기 량 | 씨씨당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씨씨 이하 | 18원 | 800씨씨 이하 | 1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씨씨 이하 | 18원 | 1,000씨씨 이하 | 12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씨씨 이하 | 19원 | 1,500씨씨 이하 | 16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씨씨 이하 | 19원 | 2,000씨씨 이하 | 22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씨씨 초과 | 24원 | 2,500씨씨 이하 | 2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씨씨 이하 | 31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씨씨 초과 | 37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0원 | 1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 |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 4. 화물자동차 | | |
| |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 |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 5. 특수자동차 | | |
| |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 |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현행 | 개정안 | | | | |
|--------|--|-----|------|--------|---------|
| | <p>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11 439 1243 603"> <thead> <tr> <th data-bbox="411 439 827 493">영업용</th> <th data-bbox="827 439 1243 493">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1 493 827 603">3,300원</td> <td data-bbox="827 493 1243 603">18,000원</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3,300원 | 18,000원 | | | | |

| 현행 | 개정안 |
|---|---|
| <p>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부장관이</u>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p> | <p>제51조(납세의무자) _____ _____ <u>건설교통부장관이</u> _____ _____ _____ _____</p> |